

의안번호	2212480
의 퇴 인	이학영 의원
회 답 일	2025. 11. 20.
추 계 번호	25B4656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6.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정의)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본문 참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정의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¹⁾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추가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1)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나.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 다만,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추진할 노무제공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시점에서 이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도 예산의 범위로 유동적이므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 －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근로자의 정의에 노무제공자가 추가될 경우 기존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신규사업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 참고로, 현재 고용노동부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산업·일자리전환 지원 사업²⁾을 추진 중이며, 동 사업에는 2026년 예산안 기준 87억 5,300만원이 편성됨
 - － 동 사업은 산업·일자리전환 지원인프라 사업과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사업으로 구성되며, 이 중 산업·일자리전환 지원인프라 사업은 탄소중립·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동이 예정되거나 진행 중인 산업·업종·지역을 분석하고, 고용안정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발굴하여 고용안정·전환지원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임
 - － 또 다른 내역사업인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사업은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사업주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무 재배치 등 훈련 및 전직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고용노동부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내용	2026(안)	지원대상
산업·일자리전환 지원인프라	- 탄소중립·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동이 예정되거나 진행 중인 산업·업종·지역을 분석 -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실업 등 일자리 위험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발굴 및 고용안정·전환지원 등 컨설팅 제공	6,696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추진기업 등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사업주가 탄소중립·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력 재배치 계획 수립 후 직무를 변경하여 재배치 예정인 근로자에게 직무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훈련비와 사업주 훈련참여금 등을 지원	2,057	탄소중립 전환 관련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 중견기업 등

자료: 고용노동부

2) 코드: 6332-304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